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. 12. 17 선고 2019가단5371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등  
말소등기]

---

## 전 문

**원고A**

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현일

**피고1. B**

2. C

3. D

4. E

5. F

**변론 종결**2020. 11. 19.

**판결 선고**2020. 12. 17.

## 주 문

1. 원고에게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,

가. 피고 B는 3/11 지분에 관하여,

나. 피고 C, D, E, F는 각 2/11 지분에 관하여,

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2. 11. 18. 접수 제45269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 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원고에게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,

가. 피고 B는 3/11 지분에 관하여,

나. 피고 C, D, E, F는 각 2/11 지분에 관하여

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2. 11. 18. 접수 제452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및 '변경된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### 2. 적용법조

피고 B, C, D, E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 판결)

피고 F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채승원

별지